



보험을 이용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 대응 방안

김규동 연구위원

인터넷, SNS,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 또는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확산되어 개인이 명예훼손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임.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개인이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 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또한, 명예훼손 이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피해는 다양하므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임

■ 인터넷, SNS, 휴대용 통신기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잘못된 정보가 사이버상에서 확산되어 특정인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공개하여 다수로 하여금 특정인과 그 주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2017년 9월에 발생한 240번 시내버스 사건¹⁾ 및 2012년 2월 발생한 채선당 사건²⁾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함³⁾
 -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에 언론 보도까지 가세하면서 특정인이 사회적으로 비난을 당하고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됨
 - 최초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지만, 이것이 피해의 경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음
- 사법부의 판단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특정 판사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의도적으로 공개하

1) 아이 엄마(A씨)의 부주의로 아이만 버스에서 하차한 후 시내버스가 출발하였고, 이후 A씨가 사실을 인지하고 버스를 세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주행 중 안전을 이유로 버스기사는 다음 정류장에서 A씨를 하차하게 하였는데, 다른 탑승객 B씨는 상황을 잘못 인지하여 버스기사를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게재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기사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사건임

2) 임산부 A씨는 외식 프랜차이즈 식당 '채선당'에서 식사 중 종업원과 말다툼 도중에 종업원으로부터 배를 걷어 차였다는 거짓을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해당 종업원과 점주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해당 점주는 1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사건임

3) 해럴드경제(2017. 9. 14), "[뉴스탐색] 채선당·국물녀·240번 버스... '마녀사냥'에 피해자만 양산"

여 당사자와 가족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명 ‘신상털기’ 식의 개인정보 유포로 주변인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허위정보 및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유포하여 특정인 및 가족들에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보상받기가 어려움

-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예훼손 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을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⁴⁾
- 타인을 비방하거나 피해를 줄 목적으로 개인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를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식이 합법적이고 접근에 제한이 없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행위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되더라도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음

■ 일부 손해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개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이버 명예훼손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약형태로만 판매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에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 사이버보험은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기업의 물적 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개인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입게 된 손해를 보장하지는 않음
-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는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음
 - 일부 보험회사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위험률을 개발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사이버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처분 결정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정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임

4)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장기손해보험에 특약형태로 부가하고 있으며, 특약의 보험료도 연 100원 수준으로 저렴함
-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사이버 명예훼손보장 상품은 수요에 적절히 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 사이버 명예훼손 특약을 알고 있는 소비자도 많지 않고, 장기상해보험 등의 주계약에 부가되는 특약으로만 판매되고 있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특정되고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이 수반되어야만 함
 - 또한, 보험금도 소액(50~100만 원)으로 정액 보상에 한정하고 있어, 물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독상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수반되는 보장임
-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상품이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인 보상 기준과 상품 운영이 필요해 보임
 -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향후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더 늘어나면 오프라인보다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은 더욱 증가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적절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임
 - 채선당 사건처럼 명예훼손으로 인해 개인이 실제로 입은 물적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정확한 위험률 산출과 안정적인 보험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처분 결정’처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보다는 피해자가 실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임
 - 명예 훼손의 원인이 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사이버상에서 포스팅 된 횟수, 언론에서 보도된 횟수, 사회적인 영향력 등을 객관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보임
 -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이 사이버 명예훼손 보험상품이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보험금 수취를 목적으로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가해자를 무분별하게 고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품설계 시 주의가 필요함
- 이 외에도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양하므로, 개인의 사이버 리스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상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함
 -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경우, 실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개발되어 있음
 - 이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처럼 검찰의 기소처분결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이 외에도, 피싱,⁵⁾ 스미싱,⁶⁾ 파밍⁷⁾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또는 온라인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카드 및 휴대폰 불법 개설 등의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여 기소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급 기준을 마련되어야 할 것임 **kiri**

5) 피싱(phishing)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웹사이트 또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임

6)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해킹하는 방식임. 해커가 보낸 문자메시지의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깔리고 해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는 것을 말함

7) 파밍(pharming)은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락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진짜 웹사이트로 오인·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수법임. 넓은 의미에서 피싱의 한 유형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싱은 사용자가 주의하면 식별할 수 있는 반면 파밍은 주의하더라도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